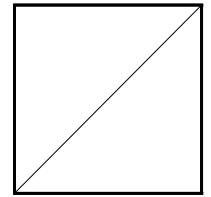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160 호
의 결 연 월 일	2021. 12. 1. (제22차)

의
결
사
항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H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안건

제출자	위원장 도규상
제출 연월일	2021. 12. 1.

1. 의결주문

NH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NH투자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에 대하여 NH투자증권(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舊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제2항
「舊자본시장법」 제57조(투자광고) 제6항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호
「舊자본시장법」 제449조(과태료) 제1항 제21호 및 제25의2호
-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설명의무) 제2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0조(투자광고) 제3항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1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2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제1항 제3호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3항, 별표3, 별표6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2021.3.25.) 심의필

<별지>

NH투자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기관에 대한 조치

과태료 5,716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 법적근거 : 「(舊)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제57조 제6항, 제249조의5 및 제449조 제1항, 「(舊)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 제53조 제2항, 제60조 제3항, 제271조의6 제 1항, 제390조 및 [별표22],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3] 및 [별표6]

II. 조치사유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 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에게 △억원(▽건) 상당의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판매하면서,

- 해당 펀드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명, 녹취 등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확인의무 이행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라 가입시점 미확인건을 일괄적으로 위반으로 보지 않고, 과거 조치사례('12년 舊우리투자증권(現NH투자증권))를 고려해 7영업일을 적용

※ (참고)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확인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 계약체결을 한 후에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 받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 필요) 이내에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하여야 함(금융위 유권해석('12.2.17.))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내역>

펀드명	판매점	판매직원	판매금액	펀드 설정일자	설명내용 확인일자	경과기일
○○○○H스타일 제21호	○○○ ○○센터	이OO	△억원	2019.6.13.	2019.6.26.	9영업일
○○○○H스타일 제22호	◇◇◇◇ ◇◇◇◇	안OO	▲억원	2019.6.13.	2019.6.25.	8영업일
○○○○크리에이터 제51호	◆◆◆ ◆◆센터	정OO	▲억원	2020.5.14.	2020.5.27.	9영업일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광고 절차 위반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 NH투자증권은 55회에 걸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없이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3,000명 이상)에게 ○○○○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

<투자광고 절차 위반내역>

발송직원	발송횟수	발송일자	총수신자수	부적격수신자수*
민OO	50회	2019.6.17.~ 2020.5.25.	회차별 2,000명 이상	회차별 2,000명 이상**
김OO	1회	2019.6.21.	137명	121명
전OO	1회	2019.9.20.	105명	22명
고OO	1회	2019.6.11.	86명	49명
이OO	1회	2020.2.4.	56명	6명
이OO	1회	2019.6.12.	54명	24명

* 투자광고 전일 잔고가 1억원 미만인 일반투자자

** 발송회차별 수신자 중 적격투자자수는 29~36명

(붙임)

관계 법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2021.3.24. 삭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투자광고) (2021.3.24. 삭제) ⑥ 그 밖에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전문투자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한 것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제47조제2항(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021.3.24. 삭제)

25의2. 제57조제6항(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자 (2021.3.24. 삭제)

□ (舊)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투자목적 등의 확인방법) (2021.3.23. 삭제)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우편
3.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제53조(설명의무) (2021.3.23. 삭제)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투자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구조와 성격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0조(투자광고) (2021.3.23. 삭제) ③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사전 확인을 받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 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 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타. 법 제47조제2항(법 제5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2021.3.23. 삭제)	법 제449조 제1항제21호	6,000
버.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2021.3.23. 삭제)	법 제449조 제1항제25호의2	10,000

□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투자광고의 방법·절차) ① 영 제60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1.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2.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최소영업자본액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들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할 것
3.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을 것
4. 투자광고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5. 협회의 투자광고안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6.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상	중	하
동 기**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중대 : 사회 경제적 물의야기, 금융기관 손실초래, 건전금융질서 저해

보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미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게 피해가 없는 경우 등

** 상 :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중 :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6> 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예정비율은 <별표3>에 따른다)

나. 「자본시장법」 제47조제2항, 제449조제1항제21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준용규정 포함)

(1) 위반건수 : 확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계약 건수

(2) 위반결과의 판단 : 위반한 계약 건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1) 중 대 : 판매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경 미 : 판매금액이 3천만원 미만 또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설명의무는 이행하였으나 확인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등 형식적으로는 법규위반에 해당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50% 적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 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검사국
연락처	02-2100-2653	02-3145-7015